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보

선 람	기관의 장

제569호

2007년 3월 12일 월요일

차 레

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-236호 공시송달공고(주식회사 우성화학) 2

회 람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인천광역시서구

편집 : 문화공보과

공 고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-236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석유판매업(용제판매소)을 등록취소 하고자 청문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(우편물반송)으로 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07년 3월 9일

<공시송달내역>

1. 예정된 처분의 제목	행정처분			
2. 당사자	성명(명칭)	(주)우석화학 대표이사 표재선		
	주 소	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-7번지		
3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석유판매업 폐업			
4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석유판매업(용제판매소) 등록 취소			
5. 법적근거	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13조 제3항 제4호 - 동법 제40조(청문)			
6. 청문 실시	기 관 명	인천광역시 서구청	담 당 부 서	지역경제과 (담당자 허 기)
	주 소	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 (☎ 032-560-4462)		
	일 시	2007년 3월 22일 14시 00분부터 18시00분까지(4시간)		
	장 소	인천광역시 서구청 지역경제과내 에너지관리팀		
	주 제 자	소속 및 직위	서구청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장	
성 명		임익현		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

(뒷면)

<청문시 유의사항>

- 1.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참고인·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. 만일,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2.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.
- 3.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4.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(문의기관 : 인천광역시 서구청 지역경제과 담당자 - 허 기 ☎032-560-4462)

[별지제11호 서식]

의견제출서

1. 예정된 처분의 제목		
2. 당사자	성명(명칭)	
	주소	
3. 의견		
4. 기타		

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0 년 월 일

의견제출인 주소 :

(전화 :)

성명

(서명 또는 인)

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

비
고

1. 기재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